NATO 개황

2014. 10.

외교부
국제기구국

목 차

Ⅰ. 개 관 ····· 1

1. 성립과정 ····· 1

2. 성격 ····· 2

가. 냉전시기: 집단 방위체제

나. 냉전 종식 이후: 집단 안보체제

3. 기본 역할 및 공동가치 ····· 4

가. 기본 역할

나. 공동 가치

4. NATO 회원국 ····· 4

Ⅱ. NATO의 구조 ····· 7

1. 정치조직 ····· 7

2. 군사조직 및 지휘구조 ····· 10

가. 군사조직

나. 군사 지휘구조: 이원적으로 존재

다. NATO 군사적 의사 결정 과정

라. NATO 회원국 군사비 지출 현황

3. NATO 예산 및 회원국 국방비 ····· 13

Ⅲ. NATO의 역사 ····· 15

1. NATO의 기원 ····· 15

가. 브뤼셀 조약

나. 미국의 입장

2. NATO의 확대 ····· 17

Ⅳ. NATO 전략개념의 변화 ····· 19

1. NATO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의 의의 ····· 19
2. 냉전 시기의 전략개념 : 방위와 억지(defence & deterrence) ··· 19
   가. 제1차 전략개념 (1949년)
   나. 제2차 전략개념 (1952년)
   다. 제3차 전략개념 (1957년)
   라. 제4차 전략개념 (1967년)
3. 냉전종식이후의 전략개념 : 대화와 협력 ····· 20
   가. 제5차 전략개념 (1991년)
   가. 제6차 전략개념 (1999년)
4. 2010년 新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 ····· 21

Ⅴ. NATO의 주요 군사임무 ····· 25

1. NATO의 역외활동 확대 ····· 25
2. 현 NATO 작전 및 임무 현황 ····· 25
   가. 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 아프가니스탄
   나. Operation Ocean Shield - 소말리아 해적퇴치
   다. Operation Active Endeavour - 지중해상 대테러 활동
   라. KFOR(NATO-led Kosovo Force) - 코소보
   마.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지원
   바. 재난 구호 활동
3. 종료된 NATO 작전 및 임무 ····· 31
   가. Operation Unified Protector - 리비아
   나. 발칸 지역
   다. 이라크 NATO 훈련단(NTM-I : NATO Training Mission in Iraq)
4. NATO의 반테러전 전개 ····· 33
   가. 동맹조약 발동
   나. 회원국 집단 대처방안 마련
   다. 대테러 협력체제 강화
   라. NATO의 대테러전 수행의 의의
5. NATO의 사이버 방위 동향 ····· 35
   가. 정책기조
   나. 구체활동
   다. NATO 사이버 방위 논의 경과

VI. NATO의 파트너십 협력 현황 ····· 37
1. NATO의 파트너십 협력 정책 ····· 37
2. NATO의 파트너십 협력 현황 ····· 38
가. 개요
나.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 Partnership for Peace)
다. 지중해 대화(MD : Mediterranean Dialogue) 파트너
라.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CI :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마.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cross the globe)
3. NATO-아태지역 글로벌 파트너국과의 관계 ····· 42
가. NATO-일본 협력관계
나. NATO-호주 협력관계
다. NATO-뉴질랜드 협력관계
라. NATO-중국 협력관계
VII. NATO 기타 주요 대외관계 ····· 45
1. NATO -EU 관계 ····· 45
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과 NATO
나. 미국의 EU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대한 입장
다. EU와 NATO의 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
2. NATO-러시아 협력 현황 ····· 48
가. 개관
나. 러시아의 대NATO 기본입장
다. 협력 갈등 현황
VIII. 한-NATO 관계 ····· 51
1. 협력관계 구축 ····· 51
가. 협력 필요성
나. 협력 기반 구축 및 제도화
2. 협력 현황 ····· 53
가. 한 · NATO 정책협의회 개최
나. NATO 아프간 작전(ISAF) 지원국 참여
다. 인적교류
IX. 참고자료 ····· 55

Ⅰ. 개 관

1 성립 과정

○ 1948.3.17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집단방위동맹 조약 체결 (브뤼셀 조약)

○ 1948.7.6 브뤼셀 조약 체결국들과 미국, 캐나다간 북대서양조약 체결 논의 개시 (워싱턴 회담)

○ 1948.12.24 북대서양조약 최종안 완성

○ 1949.4.4 북대서양조약(일명 워싱턴 조약)체결(1949.8.24 발효)

- 12개 창설 회원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1949년 4월 북대서양조약 서명식」

2 성 격

가 냉전시기: 집단 방위체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성립·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 지역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 (collective defence) 및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하여 설립된 정치·군사 동맹체로서 냉전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

○ 동구 사회주의권은 대응 차원에서 1955년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 냉전의 고착화 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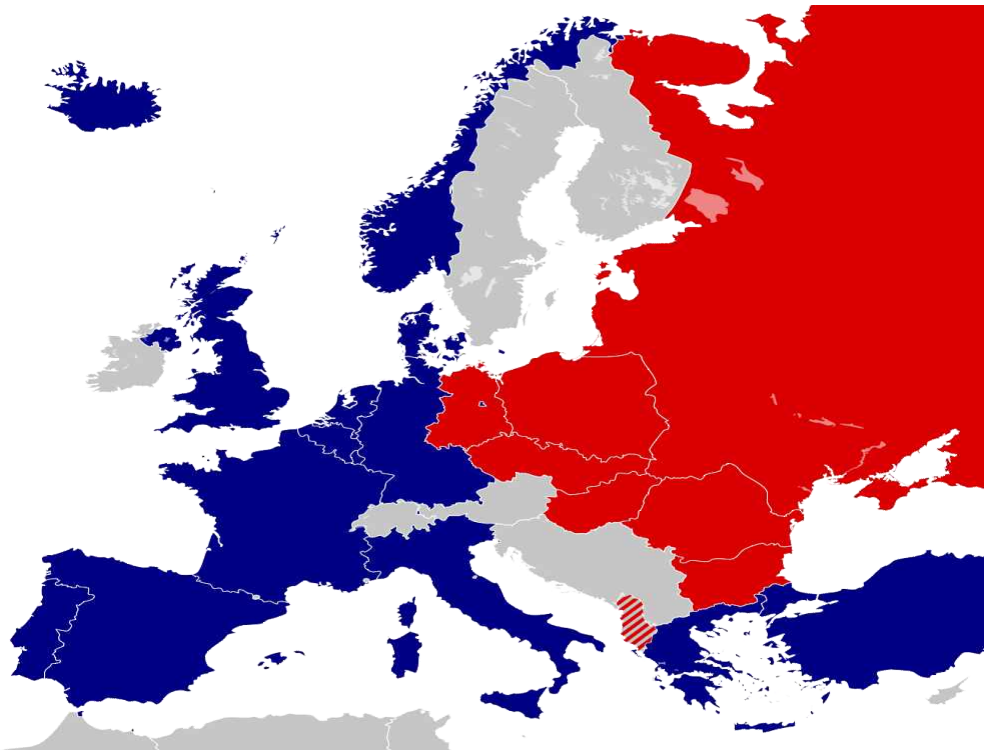

- 파란색 : NATO 회원국
- 붉은색 :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나 냉전 종식 이후: 집단 안보체제

○ 냉전 종식 이후 타국에 의한 경성 위협은 크게 감소한 반면 테러·WMD 확산·인종분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집단 안보체제로 전환

○ 특히 9/11 테러 이후 NATO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의 유럽이라는 지역적 수준이 아닌 지구적 수준에 걸쳐 발생하는 초국가적·비대칭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

○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시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②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③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을 핵심임무로 상정

북대서양조약 제5조

○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정치적 원조 제공

○ 적용 범위 : 유럽 및 북미 회원국 영토에 한정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가맹국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 가맹국 또는 그 이상의 가맹국들에 대한 무장공격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고 그러한 무장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 가맹국들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개별적 그리고 다른 가맹국들과 협력하여 공격당한 가맹국이나 가맹국들은 도울 것을 합의한다.

3 기본 역할 및 공동가치

가 기본 역할

○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 유럽·대서양 지역의 비NATO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

나 공동가치

○ UN헌장의 정신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치 원칙 준수

4 NATO 회원국

○ 현 회원국(28개국)

- 12개 창설 회원국 이외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NATO 엠블렘 의미

○ 1950년 초 국제참모진(IS)에 근무하는 무명의 직원이 디자인

○ 1953년 10월, 북대서양이사회에 의해서 공식 채택

○ 네이비 블루색은 대서양을 의미하며, 나침반은 세계평화를 지향함을 의미하며, 중간의 원은 회원국간 결속을 의미함.

NATO의 회원국 확대

1. 회원국 확대 원칙

○ NATO는 설립시부터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 부담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 회원국 가입 개방정책(Open Door Policy) 추구

※ 북대서양조약 10조 : 동 조약의 원칙을 심화할수 있고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유럽국가에 대해서도 회원가입을 초청 가능

○ 기본방향 : 회원국 확대과정의 점진성과 유연성을 확보(case-by-case 방식)하면서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불안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증대 모색

2. 가입 요건

○ 북대서양 조약 10조상 기준

- 1949년 워싱턴 조약의 원칙을 심화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

○ 1995년「NATO 확대에 관한 연구」는 아래 가입 기준 제시

-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 △OSCE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수민족 대우, △주변국과의 주요한 분쟁 해결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 △동맹에 대한 군사적 기여 능력과 의지 및 여타 회원국과 군사작전상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등

3. NATO 가입 절차

① NATO의 공식초청에 따라 가입대상국과 NATO간 가입 협의 개시
② 가입대상국, NATO 의무 준수의사 전달 및 개혁완료 일정 제시
③ 기존 NATO 회원국, 가입대상국의 북대서양조약 가입의정서 서명 및 비준
④ NATO 사무총장, 가입대상국에게 북대서양조약 가입 초청
⑤ 가입대상국은 북대서양조약의 비준후 가입서를 미국(depository)에 기탁함과 동시에 정식 NATO 회원국 자격 획득

4. 회원국 확대 현황

○ 12개 창설 회원국에서 현재 28개국으로 확대

- 1952년 터키·그리스 가입 → 1955년 서독 가입 → 1982년 스페인 가입 →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가입 → 2004년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가입 →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가입

○ NATO 가입 추진국

-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우크라이나, 조지아
  *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 국명문제로 가입 초청이 연기된 상태

※ 회원국행동계획 (MAP : Membership Action Plan)

- 1999년 NATO창설 50주년 기념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ATO 가입 추진국에 대한 맞춤(individually tailored) 자문 및 지원 제공 프로그램
- MAP 참여국은 자국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MAP 요소를 선택하여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 NATO와 정기적인 평가회의 개최, 진전 상황 등 협의
- MAP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NATO 회원국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대화를 위해 공식 초청될 필요
- 현재까지 총 11개국이 동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를 제외한 9개국이 NATO에 가입
- 2008.12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MAP 참여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추가적인 국내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 NATO, EU, OSCE 회원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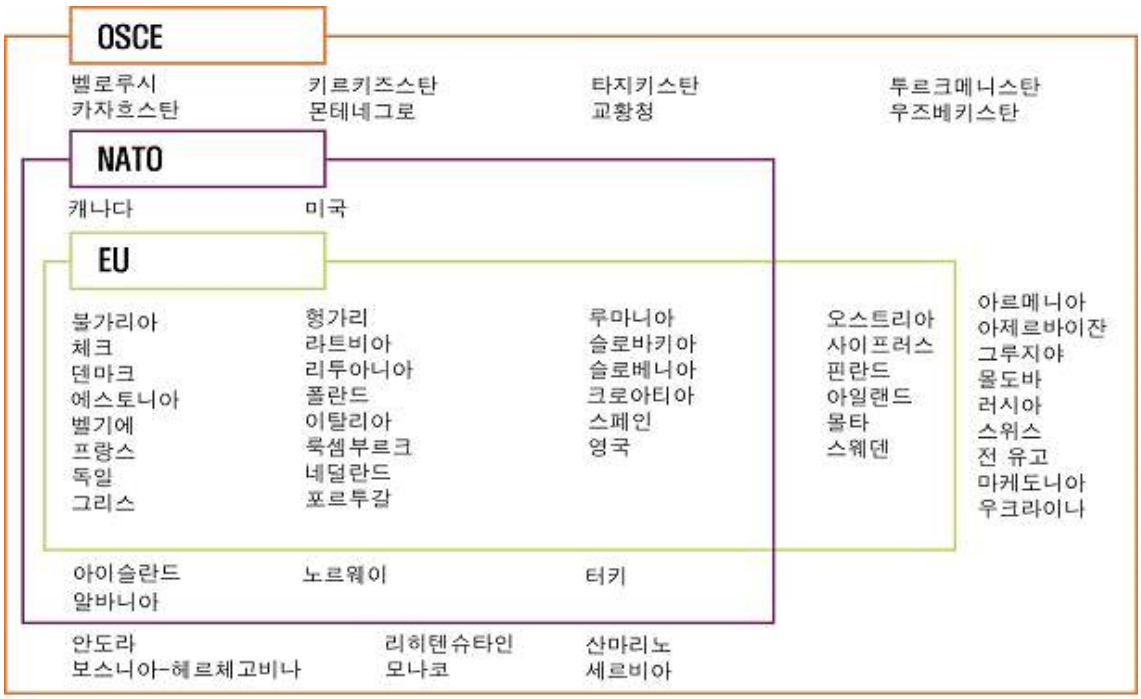

Ⅱ. NATO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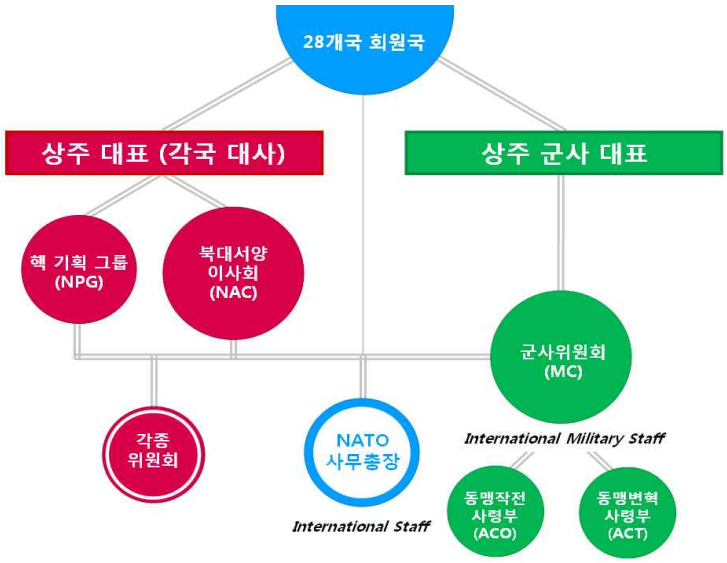

「NATO 기본 구조」

1 정치조직

❑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NAC)

○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모든 회원국의 상주 대사 또는 대표로 구성되며 동 이사회 의장인 NATO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

- 각 동맹국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로 이뤄짐
- 각 의제별로 하부 조직 (위원회 등) 구성 권한 보유

○ 정상회의, 외교·국방 장관회의 및 상주대사 회의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개최되나 각 회의의 지위와 결정의 효력은 동일함

- 일상적인 업무는 수시로 개최되는 상주 대사회의에서 결정되나, NATO 주요 결정은 정상 및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짐

- 각 회의별 개최 빈도

회의명	개최 빈도
정상회의	2년에 한번
외교장관 회의	매년 2회
국방장관 회의	매년 2회
상주대사급 회의	수시 개최

❑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 NPG)

○ NATO 집단방위의 주요 자산인 핵 억제력의 공유(Nuclear Sharing) 차원에서 1966년 설립

- NATO 핵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위 협의체로서, △ 핵 억제력 유지 △ 핵정책 개발 △핵태세 검토 역할 담당
- 독자적인 핵 정책을 추구하는 프랑스는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참여 중

○ 각 회원국 국방장관 참석下 년 2회 개최하며 핵무기 안전·안보 및 핵확산·군축 등 공동 우려 사항 토의하나 주요 정책 방향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다만,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핵 관련 업무의 특성상 주요 연구는 특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행

○ 핵기획그룹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안보 여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나, 핵 군축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핵 관련 이슈에 대한 주요 협의체 역할을 수행 중

❑ 사무총장 : Jens Stolenberg 전 노르웨이 총리(2014.10월 취임)

○ 북대서양이사회, 및 핵기획그룹의 의장으로서 회원국간 협의를 조정 및 중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 역할을 수행

○ NATO 대표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국제참모진(IS)의 수장으로 주요 관리자 임명 및 업무 감독

※ 사무총장은 전통적으로 유럽인이 수임해오고 있으며, 회원국간 만장일치로 선출 (4년 임기, 중임 가능). 현 Jens Stolenberg 신임 사무총장 (전 노르웨이 총리) 2014.10월 취임

❑ 국제참모진 – International Staff (IS)

○ NATO 사무총장 및 각종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행정기구로서 사무총장 비서실(Private Office) 및 7개실(Divis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NATO 회원국 국적의 약 1,200명(파견 포함) 직원 근무

○ △ 각국 상주 대표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자문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방위정책의 수립·기획 및 시행 △ NATO 위기 관리 능력 배양 △ NATO 정책·작전 홍보 등 공공외교 활동 등이 주요 임무

○ 주요 실국 및 임무

- 정무안보정책실(Political Affairs and Security Policy Division) : 정치·안보 사안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며 국제 기구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추진
- 국방정책기획실(Defence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NATO 안보 정책 및 일부 작전 기획 및 실행
- 작전실(Operations Division): NATO 위기관리 및 평화 유지 활동 관련 작전 입안 및 훈련 진행
- 국방투자실(Defence Investment Division): NATO 군사 전력 배양 방안 기획 및 투자 진행
- 신안보위협실(Emerging Security Challenges Division): '10년 신설된 부서로서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WMD) 확산·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이슈 대응
- 공공외교실(Public Diplomacy Division): 일반 대중 대상으로 NATO 정책 및 활동 홍보, NATO 홈페이지 운영 등 공공 외교 수행
- 기획조정실(Executive Management Division): 인사 및 재정 문제 담당

※ 주요 실국 부서장 : 사무차장보 (Assistant Secretary General)

2 군사 조직 및 지휘구조

가 군사 조직

❑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 MC)

○ NATO 최고의 군사기구
- 전 회원국의 합참의장(Chief of Defence)으로 구성
- 최고위급 회의인 합장의장 회의는 연 3회 개최
- 합참의장을 대리하여 각국의 군사대표(통상 3성 장군급) 상주
- 상주 군사대표 회의는 주1회 소집되나, 필요시마다 즉각 소집 가능

「바르텔스 대장」

○ 군사위원회(MC)는 북대서양이사회(NAC)와 핵기획그룹(NPG)내에서의 의사결정에 군사적 자문을 제공
- 북대서양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작전에 대한 군사정책·전략에 대한 방향 및 조언 제시

○ 평시 NATO 군사력은 MC를 통해 북대서양이사회(NAC)에 귀속
- 평시 동맹의 공동방위지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 군사위원회 의장은 나토 회원국 합참 의장들에 의해 선출되며 NATO 사무총장 및 북대서양 위원회의 최고위 군사 자문 역할을 수행
- 현 의장 덴마크 군 출신의 Knud Bartels 육군 대장

❑ 동맹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

「브리드러브 대장」

○ NATO의 모든 군사작전 총괄 지휘
- 동 사령부의 본부는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HAPE)로서 벨기에 몽스에 위치
- 미국유럽사령부(EUROCOM) 사령관을 겸하는 미 4성 장군이 유럽동맹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됨.
- 현 사령관 필립 브리드러브 미 공군 대장

○ 유럽동맹 최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 SACEUR)
- 북대서양이사회(NAC)의 승인에 따라 동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확인하고 회원국에 요청
- △ 동맹국 영토 통합 △ 육·해상 교통로 △ 무역의 자유 보존을 위해 지휘 권한내 모든 군사 조치 지휘 권한
- 작전과 훈련을 위해 NATO에 배정된 자원을 관리 및 우선 순위 부여

❑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

「팔로메로스 대장」

○ NATO의 군사적 변환 지휘, 군사전략·교리 개발, 군사훈련 및 병참지원
- 본부는 미국 노포크 소재
- 현 사령관은 장-폴 팔로메로스 프랑스 공군 대장

○ 동맹변혁 최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Transformation : SACT)
- NATO 군사구조·부대·교리의 변혁 주도
- 미래에 요구되는 군사적 능력 형태와 규모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확정 및 분석
- NATO 표준 발전 및 합동부대 군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운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

NATO 지휘구조 개편

○ 프라하 NATO 정상회의(2002.11)시 NATO의 신속한 위기 대응, 군사력의 효율화를 위해 지휘구조를 개편키로 결정 ⇒ 2003.9.1 기존의 군사령부들을 '동맹작전사령부' (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로 통·폐합되고,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를 신설

○ 양 사령부간 역할 중첩을 배제하기 위해 각각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작전계획을 포함한 부대의 지휘와 통제는 유럽동맹군최고사령관의 고유 권한이나, 연합 및 합동 개념과 교리의 발전 및 훈련은 동맹변혁사령관의 책임

나 군사 지휘구조 : 이원적으로 존재

○ 평시 작전통제권(Operation Command)은 각 회원국에 있으며, NATO 자체의 상비군이나 작전계획은 없음.

- 단, 평시에도 일부 방공 부대, 해·공군에 대해서는 NATO 사령관이 작전통제권 행사

○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 Command)은 정치안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지휘권을 NATO 사령관에게 위임

○ 작전계획은 상황에 따라 각국으로부터 부대를 배속받아 운용하므로 관련 상황 발생시 이에 부합하는 작계 수립

다 의사 결정 과정

1. 북대서양이사회가 특정한 상황 또는 사안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군사적 조언 요청

2. 군사위원회는 북대서양위원회의 정치적 지침에 기반하여 전략사령부(ACO 또는 ACT)에 상황 평가 및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한 최적의 군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임무부여

3. 전략사령부는 상기 전략을 마련하여 군사위원회에 보고

4. 군사위원회에 파견된 28개 회원국의 상주대표들은 상기 전략을 토의하여 컨센서스를 도출

5. 컨세서스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작업반(Working Group)이 형성되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회원국간 이견 조율

6. 군사위원회는 컨센서스로 도출한 결정을 북대서양이사회에 보고

3 NATO 예산 및 회원국 국방비

가 NATO 예산 구조

○ NATO 예산은 28개 회원국의 직접/간접 재정기여로 충당
- 직접 재정기여는 NATO 본부/조직의 운영비를 충당하며, 회원국의 GNI에 기반을 둔 공식에 따라 책정
- 간접 재정기여는 주로 회원국의 자발적인 NATO 주도 작전·임무 참여에 따른 비용 충당으로 이루어짐

○ NATO의 전체 예산은 민간 예산(civil budget)/군사 예산(military budget) /NATO 안보투자 프로그램(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으로 구성

○ 민간 예산은 NATO 국제참모진(International Staff)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 NATO 역량 개발 △ 파트너국과의 대화 및 협력 △ 대외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지출됨
- 각 회원국의 외교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2013년의 경우 총 2억유로 규모(€ 215,473,000)

○ 군사 예산은 NATO 군사조직의 작전 및 유지비로서 △ 국제군사참모진(International Military Staff) △ 전략사령부 및 여타 부속기관 운영비로 지출됨
- 각 회원국의 국방 예산으로 충당되며, 2013년의 경우 총 14억유로 규모(€1,448,799,776)

나 NATO 회원국의 국방비

○ NATO는 2006년 동맹 전체의 공동 방위 역량 유지·발전을 위해 각 회원국이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으나, 대다수 국가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3년 현재 28개 회원국중 4개국(에스토니아, 그리스, 영국, 미국)만이 GDP 2% 가이드라인 충족

※ 에스토니아(2%), 그리스(2.3%), 영국(2.4%), 미국(4.4%)

○ 미국과 유럽 회원국간 국방비 지출 격차가 증가 추세로서,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도 심화

- 2013년 현재 NATO 회원국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서, 07년(68%)이 비해 증대

- 특히, △ 정보 △ 정찰 △ 공중급유 △ 미사일 방어 등 핵심 역량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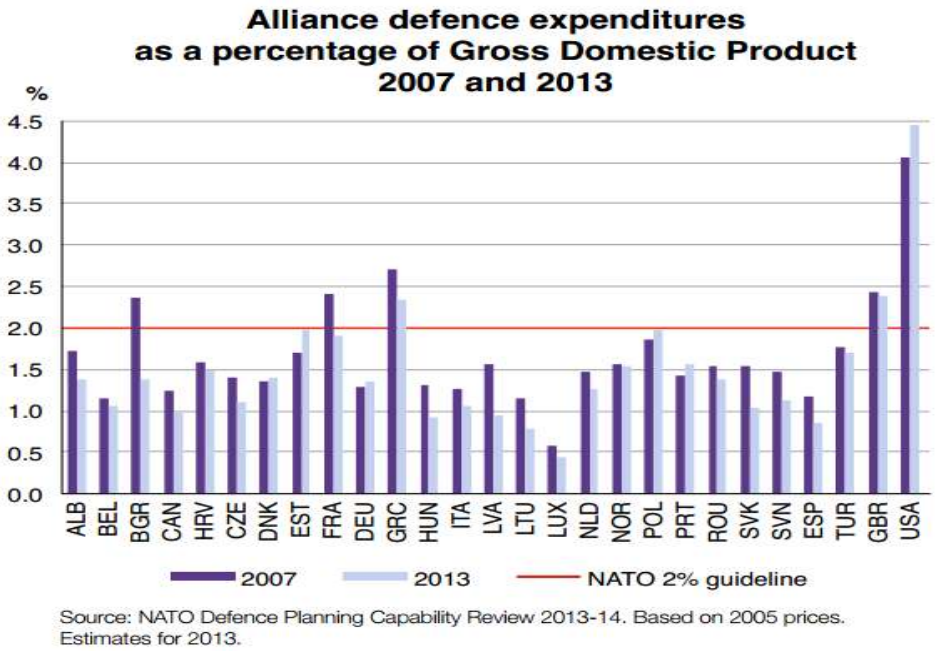

「2007-2013년간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

○ NATO는 회원국간 국방비 격차를 시정을 통해 유럽과 북미와의 보다 평등한 안보책임 분담을 추구

Ⅲ. NATO의 역사

1 NATO의 기원

가 브뤼셀 조약

○ 1948년 초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전시 3대 강대국(미국, 영국, 러시아)간 결속이 와해되고 대립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영국은 서유럽 국가와 미국·캐나다간 안보 조직 설립 적극 추진

- 영국·프랑스·베네룩스 3국 중심의 서유럽 안보 조직을 미국과 캐나다가 외곽에서 감싸는 형태의 이중적 구조를 상정
- 미국은 서유럽 방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NATO와 같은 공식적인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연루의 위험성을 감안, 일부 회의적인 입장 견지

○ 영국·프랑스·베네룩스 3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우선 체결하여 안보 수호 의지를 적극 표명, 미국측의 관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1948.3.17 집단 상호 방위 조약인 브뤼셀 조약 체결함.

나 펜타곤 회담

○ 브뤼셀 조약 체결 계기로 1948.3.22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영국·미국·캐나다간 대서양 안보 동맹 체결을 위한 비밀 회담 개시

- 유럽 지역 방위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아래 3가지 안을 대상으로 협의 진행
  ① 브뤼셀 조약에 미국·캐나다 가입
  ② 새로운 대서양 동맹 설립
  ③ 전세계적 안보 조약 체결

○ 동 회담에서 조약의 방위 영역 및 회원국 자격 등에 대한 참여국간 이견이 노정됨에 따라 공동 결과 보고서 합의에는 실패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

다 워싱턴 회담

○ 1948.7월 영국·프랑스·베네룩스 3국·미국·캐나다가 참석하는 대서양 안보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펜타곤 회담시 이견이 표출된 △ 조약의 방위 영역 △ 회원국 자격 및 기타 사안에 대해 협의 진행

- 미국은 서유럽 경제 부흥이 정치·군사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유럽 경제 재건을 도모하는 마샬 플랜(Marshall Plan)과 연계하여 북대서양 안보 조약 체결 추진
-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조약 체결보다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원조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

○ 1948.9월 회담의 중간 보고서 성격의 워싱턴 보고서 (Washington Paper) 발간

- 핵심 의제인 회원국 자격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① 핵심국 (The Hard Core) ② 징검다리국(The Stepping Stone) ③ 외부국 (the goats) 등 세가지 층위의 회원 자격 제시
- 핵심국은 공동의 전략 및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서 워싱턴 회담 참여국으로 구성
- 징검다리국은 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 등 전략적·지리적 위치상 방위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구성
- 외부국은 그리스·이탈리아·터키 등 북대서양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서유럽 방위에 필수적인 국가로 구성

○ 1948년 가을 진행된 회담 과정에서 당사국들은 북대서양 조약을 브뤼셀 조약과 별개의 조약으로 체결하고 △ 핵심국 7개국 △ 징검다리국 4개국△ 이태리를 회원국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

- 이태리의 경우 징검다리국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서유럽의 남부 영역 방어를 위해 이태리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여 창립 회원국으로 포함
- '북대서양' 안보라는 조약의 기존 범위는 이태리의 가입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향후 그리스 및 터키 가입에 중요함 함의를 제공

○ 1948.12월 북대서양 조약 최종 초안 합의, 1949.4월 워싱턴에서 조약 체결

2 NATO의 확대

가 개 요

○ 1949년 설립 이래 NATO는 냉전 시기 세 차례, 냉전 이후 4차례 등 총 7번에 걸쳐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

○ 냉전 시기 NATO의 확대

-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냉전 기간 NATO의 확대는 주로 서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짐
- 특히 동 시기 NATO의 확대는 양극간의 대립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결과를 야기 (예: 서독의 가입)

○ 냉전 종식 후 NATO의 확대

- 소련의 붕괴 이후 NATO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에서 탈피한 중·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주 공격 대상이었던 폴란드 및 발틱 3개국이 주도적으로 희망

나 냉전시기 NATO 확대

○ 제1차 확대: 그리스·터키 가입 (1952년)

- 전진방위전략 채택에 따른 그리스·터키의 군사전략적 가치 증대
- 그리스·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
- 그리스 민족주의자의 집권과 터키 외교정책의 서구 지향적 변화

○ 제2차 확대: 서독의 가입 (1955년)

- 서독의 재무장을 용인하되 유럽방위 공동체를 설립하여 서독의 군사력을 통제코자 했던 플레벤 구상이 좌초한 후 대안으로 NATO 가입의 추진
- 내부적으로는 서독을 서유럽 안보 체제에 편입하여 통제하고, 외부적으로 동-서유럽의 분단을 사실상 확정

○ 제3차 확대: 스페인의 가입(1982년)

- 스페인은 서유럽 국가의 정체성을 보유하였고 전략적인 가치도 매우 높았으나, 프랑코(Franco) 독재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NATO의 정치적 정체성과 상이함에 따라 NATO 가입이 지연
-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1982년 NATO 가입

다 냉전 종식 및 9/11 이후 NATO 확대

○ 냉전 종식 후 NATO 확대 원인

- 중·동유럽과 러시아의 역사적 갈등 관계 및 중·동유럽 국가들의 완충지대화로 인한 국가 생존의 불확실성 증대
- 중유럽 국가들은 민주화와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공통의 국가 목적 존재
- 미국의 경우 국가 이익의 지리적·이데올로기적 확장을 통하여 유럽 안보환경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통제력 강화 및 유럽에서의 다극체제 재등장 또는 경쟁적 강대국의 출현 방지 추구

○ 제4차 확대: 비제그라드 3국 (1999년)

- 1994.1월 브뤼셀 정상회의시 중·동유럽으로의 NATO 확대 공식 선언
- 1997.5월 NATO 확대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NATO-러시아 동반자관계 조약에 관한 임시 협정 체결
- 1999.4월 워싱턴 정상회의시 정식 가입

※ 비제그라드 3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 제5차 확대: 중·동유럽 7개국 (2004년)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담 계기로 초청 가입 회담 시작
- 2004.3월 NATO 가입 완료

※ 중·동유럽 7개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제6차 확대: 알바니아·크로아티아 (2009년)

- 2008.4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 계기 초청 가입 회담 시작
- 2009.4월 NATO 가입 완료

IV. NATO 전략개념의 변화

1 NATO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의 의의

○ NATO의 장기적 목표 및 기본 임무 등을 담은 공식문서로서, 새로운 안보환경의 주요 특징 및 그에 대한 NATO에 접근법을 규정함으로써 NATO 정치·군사적 발전에 대한 핵심지침 역할을 수행

○ 1949년 최초 채택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2010.11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現 전략개념(Active Engagement, Modern Defence)은 NATO의 7번째 전략개념

2 냉전 시기의 전략개념 : 방위와 억지(defence & deterrence)

❑ 제1차 전략개념(1949년)

○ 북대서양 지역의 방위를 위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se of the North Atlantic area)

○ NATO의 방어적 성격, 전쟁억지(deterrence) 및 집단방위의 중요성, 핵무기의 역할 등 규정

❑ 제2차 전략개념(1952년)

○ 북대서양 지역의 방위를 위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se of the North Atlantic Area)

○ 제1차 전략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NATO 군사조직의 효율성 강화(기존 지역별 사령부를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HAPE :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로 통합) 및 그리스, 터키 가입에 따른 북대서양조약 제6조(적용범위)의 수정 보완 등 반영

❑ 제3차 전략개념(1957년)

○ NATO 지역 방위를 위한 전반적 전략개념(Overall 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se of the NATO Area)

○ 미국의 핵전력 우위에 바탕을 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 도입
- 핵전력이 최초로 NATO 군사력에 도입

❑ 제4차 전략개념(1967년)

○ NATO 지역 방위를 위한 전반적 전략개념(Overall 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se of the NATO Area)

○ 195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핵전력 증강, 제2차 베를린 위기(1958~1962) 및 쿠바 미사일 위기(1962) 등 냉전 분위기 고조 등에 따른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 도입
- 제한적 공격에는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되, 위기 심화시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

3 냉전종식이후의 전략개념 : 대화와 협력(dialogue & cooperation)

❑ 제5차 전략개념(1991년)

○ 냉전 종식이라는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개념
- 대결과 방위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
- 이전 전략개념과 달리 내용을 일반에 공개
- 집단안보라는 근본틀은 유지하되, 파트너국 및 구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
- 핵전력의 사용 가능성은 최소화

❑ 제6차 전략개념(1999년)

○ 1999년 NATO 창설 50주년 기념 워싱턴 정상회의시 채택

○ 안보를 국방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요소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냉전 종식 이후 등장한 테러리즘, 인종 갈등, 인권침해, 정치적 불안정, 경제 위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상정

○ 기존의 집단방위에 더하여,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및 파트너십(partnership)을 NATO의 기본임무로 규정

4 2010년 新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

❑ 배경

○ 2010.11월 리스본 정상회의시 9.11 테러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NATO의 정책방향과 군사력 운용의 지침이 될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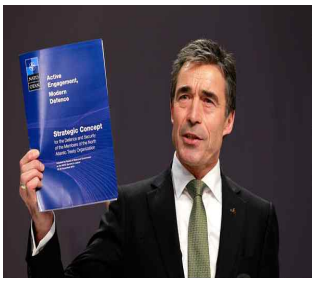

「新전략개념을 발표하는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

❑ 기본 가치

○ NATO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로 규정

❑ NATO의 핵심임무(core task) 규정

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의한 회원국간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억지력 유지
-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기존 및 새로운 안보위협(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에너지 안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구축 필요

②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 동맹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기에 대해, 그 위기의 모든 단계(발생 이전, 중, 이후)에서 위기의 발생 및 심화 예방과 위기 이후의 안정화를 위해 NATO의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동원하는 포괄적 위기관리 접근법

③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 군축·비확산에 대한 기여, NATO 회원국 확대,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국제적 안보 제고 노력
- 현재와 같이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안보환경에서는 어떠한 국가 및 국제조직도 단독으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바, 협력안보가 중요

❑ 새로운 안보 환경

○ △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 확산 위협 △ 사이버 공격 △ 테러리즘 △ 에너지안보 위협(에너지 보급로 교란 등) △ 불법 무기 거래 △ 인신매매 △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

❑ 방어와 억지

○ NATO의 억지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동 억지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간 적절한 배합(appropriate mix)에 기반을 둔다는 점과 미국, 영국, 프랑스 전략핵무기의 역할을 확인

○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NATO가 핵능력을 보유하는 동맹기구로 남을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파트너십 및 국제협력

○ NATO와 협력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

-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은 신축적으로 추진

○ NATO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러시아, EU, UN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

- NATO가 러시아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미사일 방어, 대테러, 마약퇴치, 해적퇴치 등 상호 이익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증진을 추진 희망

NATO의 군사역량 강화

1. 방위능력구상(Defence Capabilities Initiative)

○ 회원국 군사력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발전시켜 유사시 효율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9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개시

○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유럽 국가들은 제한적이나, 독자적 안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추진

2. 프라하 역량 강화공약(Prague Capabilities Commitment)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의시 정상들은 NATO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
- 대테러활동 등 NATO의 모든 군사적 활동영역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을 공약
- 모든 회원국들은 공수, 병참지원 배치, 지휘통제 및 통신, 공중정찰 등 핵심 부문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및 점검

3. 군사지휘구조 효율화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냉전시대 비효율적·경직적 지휘구조 탈피, 신속한 위기 대응 및 NATO 군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군사구조 개편 결정

○ 주요 개편 내용
- 유럽동맹군사령부와 대서양동맹군사령부 및 해협동맹군사령부 등 기존의 3개 군 사령부가 “동맹작전사령부” (ACO)로 통·폐합되고, “동맹변혁사령부” (ACT) 신설(2003.9월)
- NATO에 할당된 회원국 군병력 감축
- 군사력의 기동성 및 유연성 강화
- NATO군 지휘부 수를 65개에서 20개로 대폭 감축
- NATO 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 : NRF) 창설

4. NATO 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s : NRF)

○ 연혁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NRF 이니셔티브 합의
- 2003.6월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NRF 개념(concept) 승인
- 2004.10월 공식 임무 개시

○ 임무 :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기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 (NATO 집단방위 수행이 아닌 여타 작전에도 투입)

○ 구성
- 13,000명 규모의 육, 해, 공, 특수부대로 구성되는 다국적군인 Immediate Response Force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원하기 위한 Response Forces Pool로 구성
- Brunssum 연합사령부와 Naples 연합사령부가 교대로 신속대응군 사령부로 역할 수행

○ 운영: 각 회원국 부대가 순번에 1년을 주기로 따라 병력을 기여로 운영되며 (rotational force), 파트너국에 참여를 개방
- 2014년 ISAF 작전 종료이후 ‘통합전력연계구상(CFI: Conncted Forces Initiative)’ 추진을 위한 시험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

NATO의 군사역량 강화

5. 통합전력연계구상(Connected Forces Initiative)

○ ISAF 작전이 종료하는 2014년말 이후 NATO의 주된 역할이 작전참여에서 작전준비태세유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회원국 병력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전력연계구상 도입

○ 상기 구상은 아래 방식을 통해 구체화
- 회원국 및 파트너국간 정보 공유 제도화
- 훈련을 통한 작전 효과성과 인적 상호 운영성 증대
- 회원국 및 파트너국간 실질적인 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재정긴축 상황에서도 병력 증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의 효과적 사용 등

※ 2012.5월 시카고 정상회의에서는 NATO 주도 작전 참여 경험에 기초한 통합전력연계구상은 회원국과 파트너국간에 효과적인 협업 능력을 발전시키고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

6. 스마트 방위(Smart Defence)

○ 개념: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NATO 회원국들의 국방예산 삭감을 배경으로 NATO 회원국간 △ 공동출자(pooling)·공유(sharing) △ 우선목표 설정(setting concept) △ 정책조율(cordinating efforts)을 통해 부족한 국방역량 개발·유지

○ 사례
- 전략공수역량과제(Strategic Airlift Capability) : 12개 회원국들이 수송기(C-17)를 공동 활용
- 각국의 MD 시스템을 NATO 사령부 관할하 공동 운영
- 사이버공격 발생시 회원국의 요청으로 NATO 긴급대응팀 지원 등

○ 추진
-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스마트 방위 추진을 위한 특별대표로 버쉬바우 사무차장 및 팔로메로스 동맹변혁사령부 사령관 임명
- 유럽방위청을 통한 EU와의 협력과 더불어 파트너 국가 및 방위산업계와의 협력에 중점

○ 향후 전망
- 스마트 방위 사업으로 국방정책 공조, 다국가 기지 건설, 공동 군비 사용, 공동 조달 참여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
- 다만, NATO 회원국간 경제규모 차이, 국별 필요기종 차이, 효율성 증명방안 부족 등 여러 난관들로 인하여 실제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

V. NATO 주요 군사임무

1 NATO의 역외활동 확대

○ NATO는 1949년 창립 이후 냉전 기간 동안 군사공격에 방위와 억지(defence and deterrence)라는 기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실제 군사작전은 한건도 수행하지 않음.

○ NATO는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발칸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후 전투, 평화유지(peace-keeping), 훈련, 병참지원, 정찰,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범위의 작전을 수행하는 등 역외활동을 확대

○ 9.11 테러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과정 참여, 이라크 치안군 훈련지원, 수단 다르푸르 사태 관련 아프리카 연합(AU)에 대한 병참 지원, 파키스탄 지진피해 복구 지원,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인도물품 구호 선박 호송 지원 등 역외 활동영역을 지속 확대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만 5천명이 NATO 작전 수행중

2 현 NATO 작전 및 임무 현황

가 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 아프가니스탄

❑ 창설 배경

○ '01년 아프간전 개전 이후 체결된 Bonn 협정 및 UN 안보리 결의 1386호에 의해 창설

※ Bonn 협정 : 아프간전 개전('01.10.7)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이후, '01.12월 UN 후원 하에 아프간 제 정파간 Bonn에서 회의를 개최, 아프간 과도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Bonn 협정 체결

※ UN 안보리결의 1386호 :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강제적 분쟁해결)을 원용, 아프간의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결정하고, 아프간에 유엔에 의해 승인된 ISAF군을 파견키로 결정

○ 2003.8월부터 NATO가 ISAF의 지휘권을 행사

❑ 주요 임무

○ 아프간내 반군세력 진압을 위한 군사작전 수행

○ 아프간 군·경의 역량강화 지원

○ PRT 활동을 통한 아프간 재건 및 개발, 거버넌스 향상 지원

❑ 참여국 파병 동향

○ 14.6.1 기준 총 48개국이 약 5만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 중

(: NATO 非회원국)

국가	파병규모	국가	파병규모	국가	파병규모	국가	파병규모
미국	32,800	프랑스	177	체코	250	엘살바도르	0
영국	5,200	불가리아	378	라트비아	31	뉴질랜드	2
독일	2,695	헝가리	100	핀란드	95	룩셈부르크	1
이태리	2,000	스웨덴	219	아르메니아	121	아일랜드	7
폴란드	968	리투아니아	83	아제르바이잔	94	그리스	10
조지아	805	슬로바키아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3	아이슬란드	3
루마니아	1,002	알바니아	72	**한 국**	**50**	오스트리아	3
터키	457	크로아티아	146	슬로베니아	4	말레이시아	2
호주	356	벨기에	147	통가	55	요르단	1,069
바레인	0	노르웨이	67	몽골	40		
스페인	247	포르투갈	66	UAE	35		
덴마크	165	에스토니아	20	몬테네그로	25		
네덜란드	200	마케도니아	152	우크라이나	27	총 계	**50,503**

※ 우리나라는 2014.6월말 PRT 임무 종료에 따라 오쉬노 부대(50명) 철수

❑ 작전 수행

○ NATO는 2011년초부터 아프간측에 대한 책임이양(Transition)을 개시하였으며, 2014년말까지 아프간 전역에서의 책임이양을 완료할 예정

- 2010년에 시작된 반군퇴치(COIN : Counter-insurgency) 전략의 결과로 아프간 반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아프간 치안군경(ANSF : Afghan National Security Forces)의 역량이 강화

ISAF 작전 수행 경과

2001.12	UN 안보리 결의 제1386호에 따라 ISAF 창설
2003. 8	NATO가 UN 위임아래 ISAF의 작전지휘, 계획 및 지원 책임 인수
2004. 6	이스탄불 NATO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수도 카불로 한정된 ISAF 작전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2006. 6	ISAF 작전지역을 아프간 북부와 서부지역으로 확대
2006. 7	ISAF 아프간 남부지역으로 작전지역 확대
2006. 9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06.12말까지 ISAF의 작전지역을 아프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2006.10	ISAF 작전지역을 아프간 전국으로 확대, 12,000명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인수(NATO가 작전통제)
2010. 2	ISAF-아프간군 합동군사작전 실시

❑ Resolute Support Mission(RSM) 개시

○ 2014년말 ISAF 임무 종료 및 아프간 정부로의 권한 이양이후, 2015년 1월부터 12,000여명의 잔류 병력을 통해 아프간 군경에 대한 '훈련, 자문, 지원(TAA: Train, Advise, Assist)'을 위한 Resolute Support Mission 개시 예정

- 2012.5월 시카고 정상회의에서는 RSM 출범과 함께 아프간 전환기간(transformation decade, 2015년-24년) 아프간 군경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

나 Operation Ocean Shield - 소말리아 해적퇴치

○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 08.10월부터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작전 수행

- 제1차 : 08.10-12월, 작전명 'Allied Provider'
- 제2차 : 09.3-6월, 작전명 'Allied Protector'
- 제3차 : 09.8월-현재, 작전명 'Ocean Shield'

※ 2014.6월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는 2014년말 종료예정이었던 'Ocean Shield' 작전의 임무를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리스본 연합지휘부 산하의 SNMG(Standing NATO Maritime Group)이 총괄하며, 실제 전술 운용은 영국 노스우드 소재 해군사령부(CC Mar)가 담당

※ SNMG(SNMG1과 SNMG2로 구성)는 NATO 회원국 군함으로 구성된 NATO의 상설 해군으로서 북대서양이사회의 명령에 따라 NATO의 다양한 신속 대응 작전에 참여

- SNMG1와 SNMG2가 6개월간 교대로 임무 수행중으로 2014.1월-6월간은 SNMG1(스페인, 터키, 이태리, 네덜란드 함정 참여)가 임무 수행

※ 우크라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 소속 함정도 동 작전에 기여

○ 작전 구역 : 아덴만 및 소말리아 해분(Somali Basin) 인근 1백만 km2

○ 청해부대는 연합해군(Combined Maritime Forces, CMF) 소속으로 NATO의 Ocean Shield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CMF-NATO 함대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합해군사 (Combined Maritime Forces : CMF)

○ 임무

- 국제주요항로가 집중된 아프리카 동부 및 인도 서안, 중동의 국제해역 2500만 평방마일 내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한 다국적 해군 파트너쉽으로 △ 테러 근절 △ 해적 예방 △ 지역협력 촉진 △ 안전한 해양환경 도모가 주 목적

○ 구성

- 세 개의 연합기동대, CTF-150 (해양안보 및 테러예방), CTF-151 (해적퇴치), CTF-152 (아라비아해 걸프만 해상유전 시설 보호 등 안보협력)

※ 참가국(29개) : 한국,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영국, 미국, 노르웨이, 필리핀, 세이셸

○ 사령관

- John W. Miller 미국 해군 중장(부제독, Vice Admiral) (미 해군 중부 사령관 및 미 5함대 사령관 겸임)

○ 활동 형식

- 29개국 참가국의 함정이 주기적 교대로 작전 수행
- 참가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요구에 구속됨 없이 참여 시기 및 형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참여 형태는 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에서부터 전함, 지원함 또는 정찰기 파견에 이르기까지 다양

다 Operation Active Endeavour - 지중해상 대테러 활동

○ 지중해에서의 테러활동 억제, 방위 및 보호를 위한 해양 작전으로서 2001년부터 개시

- 2011년 9.11 테러에 따른 북대서양조약 제5조 집단방위 발동에 의거한 반테러 작전

※ NATO의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의거한 유일한 작전

○ 작전 초기에는 지중해에서의 테러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및 지브롤터 해협 등에서의 상선 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지중해 인근 파트너국가들(Mediterranean Dialogue 및 PfP)과의 협력에 바탕에 둔 테러 관련 정보 공유 및 분석 활동에 주력

라 KFOR(NATO-led Kosovo Force) - 코소보

○ NATO는 코소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 1244호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코소보 지역에서 작전 수행

○ 작전 초기에는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의 무장해제 및 세르비아군의 침략 저지가 주된 임무였으나, 현재는 코소보 지역의 안보 및 공공질서 확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보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코소보 재건 지원, 코소보보안군(Kosovo Security Force) 설립 지원 등이 주임무

○ 초기에는 약 5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코소보 지역이 안정되면서 현재는 총 31개국으로부터 파견된 약 5천명으로 구성

마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 지원

○ NATO는 아프리카연합(AU)의 요청에 따라 2005-2007년간 수단 Darfur 지역의 내전과 기아상황 종식을 위한 인도적 개입인 AU 수단 작전(AMIS : AU Mission in Sudan)에 대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군 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AU 소말리아 작전(AMISOM : AU Mission in Somalia)에 대해 항공수송 등의 지원 제공중

바 재난 구호 활동

○ NATO는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1998년 NATO 차원의 재난 구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대서양 재난구호조정센터'(EADRCC : Euro-Atlantic Disaster Relief Coordination Centre) 설립

○ EADRCC는 난민 구호활동 조정, 홍수, 허리케인, 지진 피해자 구조, 산불 진화 등 현재까지 약 60여건의 작전

- 1998.11월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홍수 구조 활동 전개
- 1999.8월 터키 지진 구호지원
- 2005.8월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구호지원
- 2005.10월파키스탄 지진 구호지원
- 2007.8월 그리스 대형 산불 진압 지원
- 2010년 파키스탄 홍수지원

※ 2001년 9.11 테러이후 CBRN(생물, 화학, 방사능, 핵) 피해에 대한 구호업무 수행

○ EADRCC는 NATO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재난 구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연습 개최

- 2000년 이래 현재까지 14차례 연습 실시
- 초기에는 NATO 회원국이 연습을 주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2003년), 카자흐스탄(2009), 조지아(2012) 등 파트너국으로 연습 실시 국가 확대

3 종료된 NATO 작전 및 임무

가 Operation Unified Protector - 리비아

○ NATO는 2011.2월 리비아에서 발생한 가다피 정권에 대한 민중 반란(uprising)과 관련, 가다피 정권의 공격 또는 공격 위협으로부터 리비아 민간인 보호를 위해 UN 안보리 결의 1970호 및 1973호에 근거하여 2011.3.31 리비아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인수

- 10.31, 작전 종료시까지 공중 작전, 무기 금수, 인도적 지원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 NATO 회원국 1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터키, 덴마크, 노르웨이) 및 4개 파트너국(스웨덴, 요르단, 카타르, UAE)이 작전에 참여

나 발칸 지역

○ 1991년 구 유고연방의 해체 이후 NATO는 발칸지역에 3차례(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9년 코소보, 2001년 마케도니아) 개입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개입

- NATO는 1995년 세르비아군에 대한 공중작전을 통해 발칸지역에 군사개입 시작
-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 체결 이후에는 UN 안보리 결의 제 1031호에 따라 협정이행군 (IFOR : Implementation Force)을 파견 평화유지활동 수행
  - 1996년에 규모가 축소된 안정화군(SFOR : Stabilization Force)으로 대체
- 2004년 SFOR 지휘권을 EU로 이양하면서 임무 종료하였고, 이후 EU가 평화유지 임무(Operation Althea) 수행중

○ NATO는 마케도니아(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1-2003년간 3개 작전 수행

- Operation Essential Harvest : 알바니아계 소수민족 단체의 무장해제
- Operation Amber Fox : 평화계획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요원에 대한 보호제공
- Operation Allied Harmony : 평화 정착을 위한 자문 제공

다 이라크 NATO 훈련단(NTM-I : NATO Training Mission in Iraq)

○ NATO는 2004-2011년간 UN 안보리결의 제1546호에 따라 이라크 군경(군인 약 5천명 및 경찰 약 1만명)에 대한 훈련, 국방개혁 자문, 군수물자(1억 1,500만 유로 상당의 군장비 및 1,770만 유로 규모의 신탁기금) 등의 지원을 제공

4 NATO의 반테러전 전개

가 동맹조약 발동

○ 9.11 테러 직후 NATO는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2001.10.2)

- 미국에 대한 테러는 '알 카에다'라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발동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대미 지원을 다짐

나 회원국 집단 대처방안 마련

○ 2001.10 NATO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 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테러 전쟁시 회원국들의 집단적 대처방안 제시

- 회원국간 테러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대테러 전쟁 수행 회원국과 이에 협조하는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회원국 영토내 항만 및 비행장 사용허가, NATO 해군력을 지중해에 배치('Operation Active Endeavor'실행), 조기경보기의 미국 본토 배치

※ Operation Active Endeavor: 2001.10.6부터 NATO가 실행중인 지중해에서의 해상교통, 선박, 화물통제 등 대테러활동

○ 상기 테러 대처방안은 NATO 회원국들의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서 북대서양조약의 실질적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요

다 대테러 협력체제 강화

○ 2001.12월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테러에 대한 NATO의 대응" 공동성명 발표

- NATO는 테러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창설후 최초로 대테러를 NATO 공동 안보정책으로 규정
- 테러에 대비한 군축, 군비통제, 비확산의 중요성 강조
-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지중해 대화상대국들의 대테러전 참여강조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의는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군사 개념(Military Concept for Defense against Terrorism) 승인

- 회원국의 재외국민, 영토, 기반시설 등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 태세 강조
- EU나 UN에 의해 시행되는 작전의 지원 문제 등 규정

○ 2002.11월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관련 파트너십 행동 계획(Partnership Action Plan on Terrorism : PAT-T)을 발표

- 테러 대응에 있어 동반자관계 국가들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

○ 2004.6월 이스탄불 정상회의시 강화된 대테러조치 패키지 (enhanced package of anti-terrorist measures)에 합의

- 테러정보 공유 체계 개선, 테러 발생국의 요청에 따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NATO의 능력 강화 등

라 NATO의 대테러전 수행의 의의

○ 냉전 이후 NATO의 존재 의미와 새로운 공동안보 위협으로서의 테러에 대한 인식의 계기로 작용

○ 유럽·대서양 안보기구로서 NATO의 위상 강화

- NATO 해군력의 지중해 배치 및 아프가니스탄 등 역외활동 확대를 통해 국제 안보기구로서 NATO의 위상 제고

○ 창설후 최초로 북대서양조약 5조를 발동,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함으로써 회원국간 결속력 강화

5 NATO의 사이버 방위 동향

가 개요

○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공격을 동맹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2011.6월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사이버 방위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 NATO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특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방위 발동 여부는 북대서양이사회 논의에 따라 결정
- 회원국간 △ 정치.기술적 협력 △ 정보교류 △ 인적자원 활용을 바탕으로 중앙집중화를 통해 NATO 기관 및 동맹국의 네트워크 방위 효과 제고를 지향하고, 사이버 방위를 NATO의 방위 계획 프로세스에 통합되도록 정책 추진
- △ 사이버 방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개별 동맹국의 사이버 공격 대응 지원 △ 연구 및 훈련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주요 임무로 추진

○ NATO는 최근 북대서양이사회 차원에서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 교육·훈련을 통한 회원국의 역량 배양 △ 전문가 파견 방안 △ 북대서양조약 제5조상의 집단방위가 발동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사이버 방위 관련 논의를 본격화

나 사이버 안보 담당 주요 기관

○ 신안보위협담당관실(Emerging Security Challenges Division)

- 브뤼셀 NATO 본부에 위치하며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대외 협력 등 사이버 안보 관련 총괄 업무 수행

○ 정보보호기술센터(NATO Information Assurance, Technology Center: NIATC)

- 동맹작전사령부(ACO, 벨기에 몽스소재) 통신정보국내 위치하여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NATO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하는 업무 담당

- 정보보호기획운영(IA Plans and Ops), 통신보안(COMSEC) 및 사고대응(COMPUSEC/NCIRC)의 하위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 작전 수행시 정보보호 지원, △ 정보보호계획 수립, △ 암호화 기술 테스트, △ 작전 현장 점검 및 암호통신기기 군수 지원, △ NATO 네트워크의 24시간 모니터링 등 역할 수행

○ 협력사이버방위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 CCDCOE)

-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위해 2008.5월에 에스토니아 탈린에 설립되었으며, 법률·정책(Legal and Policy), 훈련·교리(Training and Doctrine), 연구·개발(R&D)을 전문적으로 담당
- NATO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나, NATO의 하부 조직으로서 지위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회원국 중 자발적으로 가입·후원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의해 운영

※ 2014.7월 현재 14개 NATO 회원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프랑스, 영국) 가입

- 매년 사이버 방위 훈련 "Locked Shields " 및 국제 컨퍼런스(CyCon) 개최하는 한편, NATO 본부에서 실시하는 "Cyber Coalition" 연습 지원
- 사이버 교전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Tallin Manual" 및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한 "National Cyber Security Framework Mannual" 등 발간

Ⅵ. NATO의 파트너십 협력 현황

1 NATO의 파트너십 협력 정책

○ NATO는 1990년대초부터 다양한 NATO 비회원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협력 체제를 구축·발전

- 유럽·중앙아, 지중해 및 중동 국가들과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 Partnership for Peace), 지중해 대화상대국(MD : Mediterranean Dialogue) 및 이스탄불협력이니셔티브(ICI :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등의 구조화된 협력체제 구축
- 기타 글로벌 파트너국들(partners across the globe)과도 개별적 협력 관계 발전

○ 2010.11월 리스본 정상회의시 정상들은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NATO의 핵심임무로 상정한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

○ 2011.4월 베를린 외교장관회의시 NATO 파트너십 정책의 효율성 및 신축성 강화를 위해 아래 '베를린 파트너십 패키지'를 채택

① 정책 문서(Policy Paper : Policy for a More Efficient and Flexible Partnership)

- NATO의 정치적 협의(political consultation) 기능 강화
- 이슈 위주의 신축적 협력 증진('28+n' 방식 도입)
- 국제평화와 안보 이슈에 있어 NATO와 이해를 함께하는 모든 국가들과도 정치적 대화 및 협력 증진

② 수단 문서(Toolbox Paper : Menu of Cooperation & Individual Programmes)

- NATO의 모든 파트너국은 향후 단일 파트너십 협력메뉴(single PCM : Partnership & Cooperation Menu)에 기반하여 NATO와 개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 : Individual Partnership & Cooperation Programme)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NATO와의 파트너십 협력 이행

※ PCM : 그간 NATO의 파트너십 체제(PfP, MD, ICI 등)별로 존재해오던 협력 메뉴를 통합한 것으로서 군사협력, 훈련, 사이버 방위, 테러 대응, 군축·비확산, 에너지 안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1,600여개의 구체적 협력활동이 수록되어 있음.

③ 정치·군사 협력틀(PMF : Political & Military Framework)

- NATO 작전에 대한 파트너국가들의 참여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NATO 작전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트너국가들의 참여가 확대

○ 2014.7월 NATO는 2014년말 ISAF 작전에 따라 그동안 파트너국과의 작전 수행을 통해 축적해온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유지·증진을 파트너쉽 정책의 우선목표로 선정하고, 상호운용성 관련 제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유연한 협의채널(28+n 방식)인 '상호운용성 Platform' 출범

- NATO는 2014.7월-2015.7월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 파트너국을 '상호운용성 Platform'에 초청

2 NATO의 파트너십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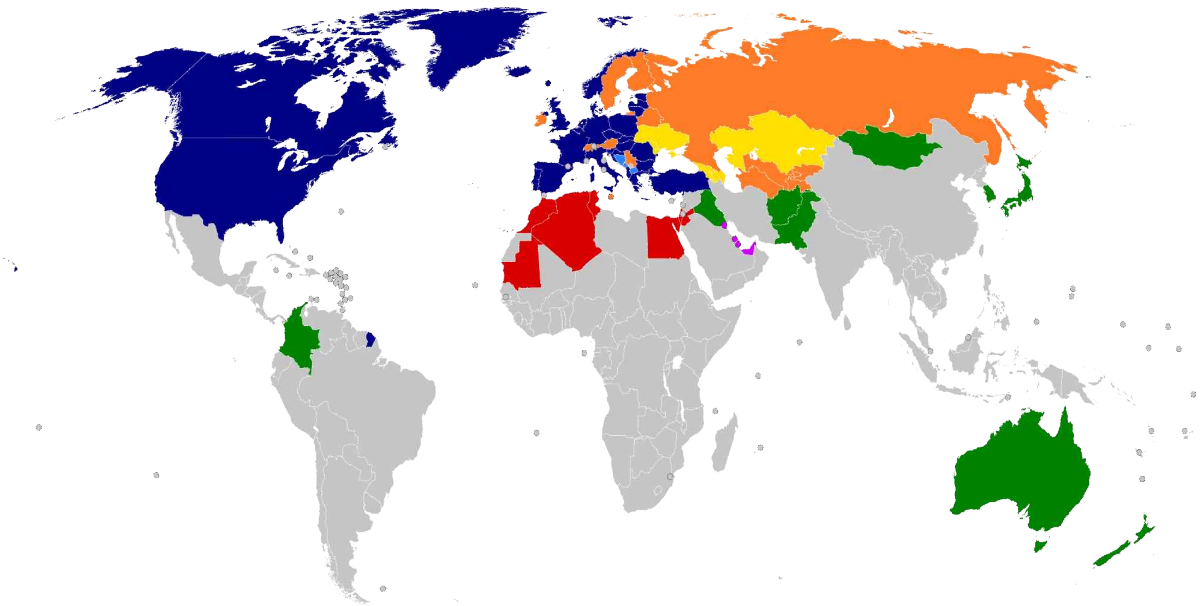

「NATO의 글로벌 파트너십」

가 개요

○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 Partnership for Peace) : 유럽·중앙아 (22개국, 러시아 포함)

○ 지중해 대화상대국(MD : Mediterranean Dialogue) :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알제리, 이스라엘, 모리타니 (7개국)

○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CI :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 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 (4개국)

○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cross the Globe)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 (8개국)

○ NATO · 러시아 이사회(NRC : NATO-Russia Council)

○ NATO · 우크라이나 위원회(NUC : NATO-Ukraine Commission)

○ NATO · 조지아 위원회(NGC : NATO-Georgia Commission)

나 평화를 위한 동반자 (PfP : Partnership for Peace)

○ 참가국 :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루로시, 핀란드, 조지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몰타,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유럽·중앙아 22개국)

※ 현재까지 총 3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12개국은 NATO에 이미 가입

○ NATO와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신뢰구축, NATO 가입준비 지원, 안보협력을 위해 1994년 형성

※ NATO는 Partnership for Peace에 대해서는 고유명사로서의 Partnership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타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협력관계를 지칭하는 partnership을 사용

EAPC :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 28개 NATO 회원국과 22개 PfP 참여국들(총 50개국)의 정치 포럼
- 정치·안보 이슈에 대해 정기적인 대화·협의 실시

○ 1996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14개 PfP 국가들이 NATO 회원국들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교해진 PfP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정치포럼 결성 목적으로 1997년 창설
- 1991년 설립된 북대서양협력이사회(NACC :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대체

○ EAPC 대사급 월례회의, 연례 외교, 국방장관회의, 군지휘관 회의, 정상회의 등 개최

○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NATO 본부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정례적 또는 수시 정책 협의를 실시

○ 장기적으로 위기관리, 평화지원 활동, 지역문제, 군비통제, WMD 비확산, 국제테러, 국방개혁, 민간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 예정

다 지중해 대화(MD : Mediterranean Dialogue) 파트너

○ 지중해 지역 국가와의 신뢰제고 및 안보협력을 위해 1994년 5개국(이집트, 이스라엘,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으로 설립된 후, 1995년 요르단, 2000년 알제리 가입을 통해 현재 총 7개국으로 확대

○ NATO와 지중해 지역(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테러리즘, WMD 확산, 실패국가, 국제조직범죄 등)에 대해 공동대처

○ 2004년 이스탄불 정상회의시 국방개혁, 국경안보, 테러 공동 대응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

○ NATO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의 SFOR(Bosnia and Herzegovina) 참여, 요르단, 모로코의 KFOR(Kosovo) 참여 등

라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CI :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 참가국 :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중동 4개국)

○ 지중해대화(MD)에 참여하지 않는 중동국가(broader Middle East)들과의 테러 대응 및 WMD 확산 방지 등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을 위해 2004년 설립

※ NATO 사무차장이 2004.6 이스탄불 정상회의를 앞두고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6개 회원국(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을 방문해 동 회원국들의 ICI 참여를 초청한바, 현재 이중 4개국이 참가중

마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cross the globe)

○ NATO는 90년대부터 NATO의 공식적 파트너십 틀(PfP, MD, ICI)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임시적(ad hoc)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체계적 협력관계 강화 추진

○ NATO는 2006년 리가(Riga) 정상회의에서 '비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원칙'을 결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접촉국가(Contact Countries)로 지정

※ '접촉국가'는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의시 'partners across the globe' 라는 용어로 통칭

○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NATO-접촉국가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NATO는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 후 정무안보정책담당 사무차장보(ASG) 산하에 파트너십협력국(ICPD : Integrati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Directorate)을 신설하고, 여기에 접촉국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과(Contact Countries and Global Partners Section)를 신설

○ 현재는 한국, 일본, 호주, 몽골, 뉴질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글로벌 파트너국에 해당

3 NATO - 아태지역 글로벌 파트너국과의 관계

가 NATO-일본 협력

○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 추진 차원에서 NATO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 이슈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희석시키고자 노력 중

「2014.5월 아베 총리 NATO 본부 방문」

-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 정상 중 유일하게 NATO를 2차례(07.1월, 14.5월)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연설

○ 아베 총리 NATO 방문(14.5월) 계기 일본-NATO 개별파트너쉽협력 프로그램(IPCP) 체결

※ 일본-NATO IPCP 우선 협력분야: △ 사이버 방위 △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 반테러 △ 군축 비확산 △ 해양안보 및 해적퇴치 △ 분쟁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 국방과학 기술 △ 여성, 평화 및 안보

○ 고위급 인사 교류

- '13.4월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 방일, 일본-NATO 공동정치 선언 발표
- 매년 일본 외무심의관-NATO 사무차장보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

○ 인도지원 및 재난구호 협력

- '13.7월 인도지원 및 재난구호 경험 공유 및 공동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그룹 설립
- 공동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NATO간 가상 훈련 실시 추진

○ NATO 주관 위기관리·재난구호 컨퍼런스 참여

- '13.10월 NATO 본부 개최 Civil Emergency 컨퍼런스 및 워크숍 참석

○ NATO 대아프간 작전지원

- 일본은 ISAF 지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아프간 군경 및 경제사회 분야 지원에 기여중

※ 2012.6월 동경회의에서 아프간 경제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13년간 50억불 공약

※ 2010-12년간 법질서신탁기금(LOFTA)에 6억불 기여/ 아프간군 신탁기금(ANATF)에 5천4백만불 기여

나 NATO-호주 협력

○ NATO-호주간 전략대화 개최
- 2002년 개시, 18개월 주기로 회의 개최 (국제안보전반 협의)
-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자 참석

○ 고위급 교류
- NATO 사무총장, 호주 방문(2005년, 2012년)
- Downer 호주 외무장관, NATO 방문(2005 및 2006년)
- Kevin Rudd 총리,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의 참석
- Julia Gillard 총리 2010.11월 리스본 정상회담 및 2012.5월 시카고

※ 2013.2월 호주-NATO IPCP 체결

○ NATO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Ocean Shield' 참여

○ NATO 대아프간 작전 참여 및 지원
- ISAF에 병력 약 1,500명 파견(NATO 비회원국 중 최대 규모)
- 아프간 남부 Uruzgan주에 PRT 운영
- 2014.7월 현재 아프간군 신탁기금(ANATF)에 1.5억불 기여

다 NATO-뉴질랜드 협력

○ 양측간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으나, 2001년부터 총리 및 외교장관이 정례적으로 NATO 방문
- 2008년 부카레스트 NATO 정상회의시 총리 참석

○ ISAF 병력 파견 및 Bamyan주 PRT 주도

라 NATO-중국 협력

○ NATO-중국 관계는 2002년 당시 NATO 사무총장과 주벨기에 중국 대사간 면담을 계기로 공식 개시 (파트너 범주에 미포함)

- NATO는 범세계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안보 차원에서 실용적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입장

○ 2007년부터 연례 NATO-중국 고위급 회의 개최

- 2011.6월 북경에서 제5차 회의 개최 (NATO 전략개념, 미사일방위, 한반도문제 등 협의)

※ 수석대표 : Brengelmann 정무안보정책 차관보, Fu Ying 외교부 부부장

○ 2010.6월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의 NATO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상황

Ⅶ. NATO 기타 주요 대외관계

1 NATO-EU 관계

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과 NATO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 EU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CFSP) 추진이 명문화

○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 CFSP의 본질적인 요소로 공동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 ESDP)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여 EU 독자적인 방위능력 개발의 필요성의 기초를 제공

○ 1999년 EU 헬싱키 정상회담
- 기본적으로 EU는 분쟁방지와 위기관리 임무(Petersburg 임무)에 한정시킨 활동을 상정
- NATO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EU가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제한적 형태로 공동안보방위정책을 추진
- EU 이사회에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및 군사참모부 설치, 5~6만의 신속대응군을 창설 목표 수립(상비군의 개념은 아님)

※ Petersburg 임무 : 유럽내 분쟁에서 인도적 구조, 평화 유지, 평화 구축 및 위기관리 등을 위한 임무

○ 2002.12월 NATO-EU 공동안보방위정책 선언 (NATO-EU Declaration on ESDP)
- NATO의 군사작전 기획능력을 EU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본원칙으로 △ 효율적 상호 협의 △ EU와 NATO 정책결정의 독자성 존중 △ 일관성, 투명성, 상호 보완성에 기반한 군사능력 개발 등 강조

○ 2003.3월 EU-NATO 베를린 플러스 협정(Berlin Plus Agreement)

- NATO가 관여하지 않는 EU 작전수행시 NATO 능력 활용
  ·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SFOR)시 EU가 NATO의 작전기획 능력을 활용
- 베를린 플러스 협정은 EU가 NATO와 중복된 군사기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형성된 타협안인 바, EU 주도 위기관리 작전시 NATO 시설·자산, 지휘, 작전기획능력을 활용토록 허용

※ 베를린 플러스 협정에 따라 EU와 NATO는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코소보, 아프간, 다르푸르, 소말리아(해적퇴치) 임무에서 협력중

○ EU의 활동 현황

- EU는 발칸지역, 아프리카 등 EU 회원국들이 과거 식민지배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지역문제에 주로 개입

※ 2003년 이래 현재까지 26개의 군사/민간 임무단 파견

- 2014.7월현재 코소보, 아프간, 이라크, 가자지구, 조지아, 소말리아, 남수단, 리비아, Horn of Africa 지역 등에서 총 14개의 EU 군사/민간 임무단 활동중

○ 2009.12월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의 임무 확대 등 방위분야에서의 EU의 역할이 강화된 면도 있으나, 여전히 방위분야가 회원국의 주권사항으로 단기간내 정부간 협력의 성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EU가 NATO를 떠나 독립적인 안보방위 구조를 형성하기에는 방위예산 및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

- 양 기구에 모두 회원국인 국가(21개국)들이 어느 일방 기구에 배타적으로 할당한 병력 부재
- 현재 유럽안보는 NATO가 주된 역할을 하고, EU는 독자적인 능력 향상을 추구하면서 NATO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

○ EU-NATO간 협력을 위한 양 기구간 대화채널을 유지

- NATO와 EU 외무장관 합동회의 개최(2005.9 최초 개최 이후 연 2회 이상 개최), NATO NAC(North Atlantic Council)-EU PSC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간 합동회의, 합동 군사위원회 회의 등 개최

※ 2013.12월 NATO 사무총장, EU 정상회의 참석

- 작전 차원의 협력강화를 위해 2005.11월 EU 군사위원회내 상설 NATO 연락팀 설치 및 2006.3월 SHAPE내 EU 사무소 개설

○ EU의 군사참모부(EU Military Staff, 현재 회원국이 약 200명의 군 인력을 파견) 설립, 과거 수단 Darfur 사태에 양 기구가 동시에 개입하는 등 일부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기도 한 바, 향후 양 기구간 분명한 역할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

나 미국의 EU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대한 입장

○ 3D(no Decoupling, no Duplication, no Discrimination : 유럽안보와 미국안보의 분리 방지, 방위능력의 중복 방지 및 비 EU NATO 회원국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전제로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대해 지지

다 EU와 NATO와의 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

○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 특히 공동안보방위분야에서의 많은 발전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ESDP 차원에서 다수의 군사 및 민간 임무단을 파견해오면서 독자적인 안보방위능력 배양에 노력

○ 그러나 안보방위문제가 여전히 회원국의 핵심적 주권사항에 속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바, EU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안보방위능력을 구축하는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명칭이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으로 변경되는 등 CSDP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나, CSDP의 미래는 향후 NATO의 변환 과정과 EU-NATO 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2 NATO-러시아 협력 현황

가 개관

○ 냉전 종식후, 테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마약, 해적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안보위협이 늘어나면서 상호 협력 필요성 공감

○ 2002.5월 설립된 NATO-러시아 협의회(NRC : NATO-Russia Council)를 통해 동등한 파트너로서(28개 NATO회원국+1국 형태가 아닌 29국간 협의체) 안보분야 상호 관심사 협의중

○ 2008.8월 조지아 사태로 인해 NATO-러시아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Obama 미국 대통령의 동유럽 MD 배치계획 철회(2009.9월), Rasmussen NATO 사무총장의 방러(2009.12월), 미-러간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서명(2010.4월) 등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

○ 2010.11월 리스본 개최 NATO-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 안보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21세기 공동안보위협 합동평가서(Joint Review of the 21st Century Common Security Challenges)를 추인

○ 러시아는 NATO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조지아의 NATO 가입 등에 반대

○ 2014.4월 NATO는 러시아의 크리미아 병합이후 러시아와의 대사급 접촉을 제외한 모든 실무협력을 전면 중단

나 러시아의 대NATO 기본입장

○ NATO가 러시아를 유럽 및 세계문제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로 수용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관계 개선을 추진

○ NATO의 동진으로 NATO의 미사일 방어계획 등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 국경에 근접하는 것과 NATO가 본래의 권한 밖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 대테러, WMD 비확산, 아프간 등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는 NATO와의 협력 확대에 긍정적

다 협력 갈등 현황

❑ 대테러

○ 2004.12 NRC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테러 행동계획(NRC Action Plan on Terrorism) 승인

○ 러시아, 2006-2008년간 NATO의 대테러 작전인 Operation Active Endeavor에 참여
- 2010.11 NRC 정상회의에서 동 작전 지원 재개의사 표명

❑ ISAF 지원

○ 러시아는 2008년 ISAF 작전에 필요한 비군사 장비(non-military equipment)의 러시아 영토를 통한 아프간 수송을 허용하였으며, 2010.11월 리스본 NRC 정상회의에서는 탄약, 탱크, 총기 등 치명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non-lethal goods)의 수송을 허용

❑ 미사일 방어

○ 2010.2월 오바마 행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검토 보고서(BMDR)를 통해 이란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MD) 구상을 발표

○ 2011.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내 MD 체계 구축 관련, 냉전 대결 양상이 지속되는데 강한 우려 표명

○ 2012.5월 NATO측은 시카고 정상회의시 NATO-러시아 미사일 정보융합센터 설립을 제안

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 러시아 관계

○ NATO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 및 크리미아 병합을 강력히 비난하며, 2014.4월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대사급 실무 접촉을 제외한 러시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

- 발트해 air policing 강화 및 폴란드 군사 훈련 실시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동유럽 회원국(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에 대한 재보장 조치 시행
- '준비태세행동계획(Readiness Action Plan)' 수립 등 집단방위 강화를 위한 조치 추진
- 신탁기금 설립 등 우크라이나의 국방 개혁 추진 및 군 현대화 지원

○ NATO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냉전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서 유럽-대서양지역의 전략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 향후 NATO의 근본적인 전략수정 및 대러관계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VIII. 한-NATO 관계

「2013.4월 라스무센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예방」

1 협력관계 구축

가 협력 필요성

○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안보협력 파트너 역할

-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테러, 해적, 사이버방위, 에너지안보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단독 대처가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
- NATO는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유용한 협력파트너로 활용 가능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과 역할 강화

- 우리의 국제적 위상 및 역할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및 아젠다 공유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이행 필요
- NATO 회원국들은 우리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

나 협력기반 구축 및 제도화

○ 2005.12월 반기문 외교장관의 NATO 본부 방문 및 북대서양이사회(NAC) 연설

○ 2006년 리가 NATO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접촉국가 (Contact Country)로 지정

「2012.9월 IPCP 서명식」

○ 한·NATO 정보보안양해각서 체결(2009.12월)

○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체결(2012.9월)

한-NATO 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

1. 개요

가. IPCP 성격

○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은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framework document)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2년 단위로 갱신

※ 현재 NATO는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과 IPCP 체결 완료

나. 한-NATO IPCP 협의과정

○ 2011.7월 양측간 IPCP 관련 협의를 개시하여, 2012.8월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IPCP 최종 문안 승인

다. 한-NATO IPCP 서명식

○ 일자 및 장소 : 9.20(목), 벨기에 브뤼셀

○ 서명자 :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및 버시바우 NATO 사무차장

2. 한-NATO IPCP 주요 내용

가. 협력 목표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

○ 기술·과학 교류를 위한 기회 창출

○ 교류,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배양

나. 협력 과제

○ 新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평화·안보 과학기술(SPS,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프로그램 공동협력 프로젝트 수행

○ 병력 배치·기동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한-NATO 공조 증진

○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 경험을 아프간 등 협력대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공동 도전에 대처하는 NATO의 지식과 잠재력 보완

○ 한국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 및 지방재건팀 운영 평가

다. 우선 협력분야

○ ① 사이버방위 ② 테러리즘 대처 ③ 에너지안보 ④ 평화·안보 과학기술(SPS) 프로그램 ⑤ 협의·지휘·통제(C3) ⑥ 배치·기동 ⑦ 방위 연구·기술 ⑧ 군비통제·군축·비확산 ⑨ 방위 정책·전략

3. 기대 효과

○ 사이버안보, 대테러, 에너지안보, 군축·비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우리측은 다양한 NATO 연수·훈련·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한-NATO간 실질 협력 증진

2 협력 현황

가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 제1차 2008.6월 (브뤼셀)
- 수석대표 : 우리측 송영완 국제기구정책관
NATO측 Martin Erdmann 사무차장보

○ 제2차 2009.6월 (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윤 정책기획국장
NATO측 Martin Erdmann 사무차장보

○ 제3차 2010.7월 (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윤 정책기획국장
NATO측 Dirk Brengelmann 사무차장보

○ 제4차 2011.6월 (브뤼셀)
- 수석대표 : 우리측 이현주 국제안보대사
NATO측 Dirk Brengelmann 사무차장보

○ 제5차 2012.6월 (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백지아 국제기구국장
NATO측 Dirk Brengelmann 사무차장보

○ 제6차 2013.10월 (브뤼셀)
- 수석대표 : 우리측 김문환 국제기구국장
NATO측 Terry Stamatopoulos 사무차장보

나 NATO 아프간 작전(ISAF) 지원국 참여

○ ISAF 참여협정·재정협정 체결을 통한 ISAF 지원국 참여(2010.4월)

○ 아프간 지방재건지원팀(PRT) 설치 (2010.7월)

○ NATO ISAF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참석

- 이용준 차관보, ISAF 지원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2009.12월)
- 민동석 제2차관, ISAF 지원국 정상회의 참석 (2010.11월)
- 김재신 차관보, ISAF 지원국 정상회의 참석 (2011.4월)
- 김성환 장관, ISAF 지원국 정상회의 참석 (2012.5월)

※ 우리정부의 아프간 군경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2011년-15년간 5억불 기여 계획 발표

다 인적 교류

○ 반기문 외교장관 NATO 본부 방문(2005.12월)
-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NATO 방문

○ 반기문 외교장관, NATO 사무총장 회담(2006.9월, 뉴욕)

○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 NATO 방문(2008.9월)

○ 유명환 외교장관 NATO 방문(2009.3월 및 2010.5월)

○ 신각수 외교차관 NATO 방문(2009.3월)

○ 이상의 합참의장 NATO 방문(2010.1월)

○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NATO 방문 (2012.8월)

○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 방한 (2013.4월)

○ NATO 의원연맹 의원단 방한(2008.10 및 2010.11월)

○ 국회의원 대표단, 08년부터 NATO 의원연맹 총회 참석

「'13.9월 라스무센 사무총장-윤병세 외교장관 면담」

Ⅸ. 참고 자료

【NATO 약황】

(개 관)

o 성립 과정
- 1948.7.6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7개국이 북대서양조약 체결 논의(워싱턴회담)
- 1949.4.4 북대서양조약(일명 워싱턴 조약) 체결 (1949.8.24 발효)
- 12개 창설 회원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o 성격
- 냉전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방위기구
- 냉전종식 이후에는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emerging security challenges)에 대응하여 집단안보협력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환중

o 회원국(28개국)
- 12개 창설 회원국 이외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o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주요내용
- 집단방위 (제5조, 핵심조항) :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원조 제공
- 적용범위 : 유럽 및 북미 회원국 영토에 한정

(NATO의 구조)

o 정치조직
- 북대서양 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NAC) :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방위기획위원회(Defence Planning Committee : DPC)
-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 NPG)
- 사무총장(Jens Stoltenberg 前 노르웨이 총리 (2014.10.1 취임))

o 군사조직
- 최고 결정기구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 MC) 산하 동맹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와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로 구성

(NATO의 군사역량 강화 모색)

o 새로운 군사전략 추진
- 신전략개념(Alliance Strategic Concept)
- 방위능력구상(Defence Capabilities Initiative)
- 프라하 역량 강화공약(Prague Capabilities Commitment)

o 군사구조 개편
- 2003.9.1 유럽동맹군사령부와 대서양동맹군사령부 및 해협동맹군사령부 등 기존의 3개 사령부가 "동맹작전사령부" (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로 통·폐합되고,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 신설
- 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 : NRF) 창설

(NATO의 대외활동 확대 동향)

o 주요 대외활동 현황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프간, 소말리아, 리비아 등

o NATO의 反테러전 전개
- 9.11 테러 직후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2001.10.2),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발동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대미 지원을 다짐
- 2001.10 이래 "Operation Active Endeavor" 수행 (지중해상의 대테러 활동)
-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휘권을 2003.8 인수

(非NATO 회원국과의 협력 메커니즘)

o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 PfP) : 러시아 등 유럽국가 22개국
o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 EAPC) : 28개 NATO 회원국과 22개 PfP 참여국들 (총 50개국)
o NATO·러시아 이사회(NATO-Russia Council : NRC)
o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 : NUC)
o NATO·그루지야 위원회(NATO-Georgia Commission : NGC)
o 지중해 대화상대국(Mediterranean Dialogue Partners : MDP) : 이스라엘 등 7개국
o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 ICI) : 쿠웨이트 등 4개국
o 글로벌 파트너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한-NATO 협력관계 개시(2005년)**
- 2008년 이래 매년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 NATO 사무총장 인적사항 】

성 명	o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생년월일	o 1959.3.16(55세)	
학 력	○ 오슬로 대학 학사(경제학) (1987)	
경 력	o 2014.10.1 NATO 사무총장 취임 o 2005-2013.10 총리 o 2002-현재 노동당수 o 2000-2001 총리 o 1996-1997 재무장관 o 1993-1996 통상·에너지장관 o 1990-1991 환경부차관 o 1979-1991 Arbeiderbladet 기자	
가족관계	o 노르웨이어, 영어	
방한경력	o 기혼, 자녀 2명 - 부인은 외교관인 Ingrid Schulerad	

【북대서양 조약 원문】

Washington D.C. - 4 April 1949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 their faith in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ll governments. They are determined to safeguard the freedom, common heritage and civilization of their people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dividual liberty and the rule of law. They seek to promote stability and well-being in the North Atlantic area. They are resolved to unite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ce and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They therefore agree to this North Atlantic Treaty :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a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tribute towar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eaceful and friendly international relations by strengthening their free institutions, by bring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upon which these institutions are founded, and by promoting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being. They will seek to eliminate conflict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and will encourage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any or all of them.

Article 3

In order more effectivel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Treaty, the Parties, separately and jointly, by means of continuous and effective self-help and mutual aid, will maintain and develop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capacity to resist armed attack.

Article 4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any of them, the territorial integrity,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any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Article 6

For the purpose of Article 5, an armed attack on one or more of the Parties is deemed to include an armed attack:

o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in Europe or North America, on the Algerian Departments of France, on the territory of or on the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of the Parties in the North Atlantic area north of the Tropic of Cancer;
on the forces, vessels, or aircraft of any of the Parties, when in or over these territories or any other area in Europe in which occupation forces of any of the Parties were stationed on the date when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or the Mediterranean Sea or the North Atlantic area north of the Tropic of Cancer.

Article 7

This Treaty does not affect, and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ffecting in any way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Parti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8

Each Party declares that none of the international engagements now in force between it and any other of the Parties or any third State is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d undertakes not to enter into any international engagement in conflict with this Treaty.

Article 9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uncil, on which each of them shall be represented, to consider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The Council shall be so organised as to be able to meet promptly at any time. The Council shall set up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necessary; in particular it shall establish immediately a defence committee which shall recommen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3 and 5.

Article 10

The Parties may, by unanimous agreement, invite any other European State in a position to further the principles of this Treaty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to accede to this Treaty. Any State so invited may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by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inform each of the Parties of the deposit of each such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11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and its provisions carried out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notify all the other signatories of each deposit. The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between the States which have ratified it as soon as the ratifications of the majority of the signatories, including the ratifications of Belgium, Canada, France, Luxembourg,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eposited and shall come into effect with respect to other States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ratifications.

Article 12

After the Treaty has been in force for ten years, or at any time thereafter, the Parties shall, if any of them so requests, consult together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Treaty, having regard for the factors then affec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as well as regional arrangement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13

After the Treaty has been in force for twenty years, any Party may cease to be a Party one year after its notice of denunciation has been given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inform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Parties of the deposit of each notice of denunciation.

Article 14

This Treaty, of which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ly certified copies will be transmitted by that Government to the Governments of other signatories.

/끝/